

국민이 신뢰하고 감동하는 시험평가기관



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



수신자 전국위생사 관련 학과장

(경유)

제 목 위생사 국가시험 '위생관계법령' 변경 안내

1. 위생사 국가시험 발전을 위한 귀 대학의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.
2. 위생사 국가시험 과목 중 위생관계법령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오니, 응시자가 수험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아 래 -

가. 위생사 국가시험 '위생관계법령' 변경 안내

1) 적용 시기: **2016년도 제38회 위생사 국가시험부터**

2) 공지 내용: 「위생사에 관한 법률」이 폐지되고 그 내용을 통합하여 개정된 「공중위생관리법」 및 동법 시행령이 2016.8.4.자로 시행됨에 따라, 위생관계법령 과목 관련법 중 「위생사에 관한 법률」을 「공중위생관리법」으로 변경하여 적용함.

■ 공중위생관리법 개정(2016.8.4. 시행)에 따른 위생관계법령 과목 내용 변경

시험 과목	변경 전	변경 후
위생 관계 법령	「위생사에 관한 법률」, 「식품위생법」,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, 「먹는물관리법」, 「폐기물관리법」, 「하수도법」과 그 하위 법령	「공중위생관리법」, 「식품위생법」,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, 「먹는물관리법」, 「폐기물관리법」, 「하수도법」과 그 하위 법령

※ 제38회 위생사 국가시험(2016년도)부터 적용되어 출제됩니다. 끝.

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



사원

김성태

출제관리2부장

조희식

출제운영국장

이경신

사무총장

임종규

원장

임종규

08/17

협조자

시행 출제관리2부-35

(2016-08-17)

접수

()

우 05103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45 5층 출제운영국

/ <http://www.kuksiwon.or.kr>

전화 02-2087-8873

전송 02-2087-8869

/ kimst@kuksiwon.or.kr

/공개